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03. 10. 22.

제 출 자

이형만 의원등10인

□ 제안이유

-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장과 부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음 (안 제8조 제1항)
-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 자유발언”이라 함)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의원은 5분 자유발언 48시간 전까지 발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제1항)
-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제2항)
-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함(안 제31조의2 제3항)
-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안 제33조 제1항)
-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 함. (안 제 66조의2 제2항)
- 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 할 수 있고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연장 할 수 있음 (안 제 66조의2 제3항)
-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 내용을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함(안제66조의2 제4항)
- 보충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질문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6조의2 제 5항)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2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동조제1항중 “3분 이내의 발언”을 5분 이내의 발언“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자유발언 48시간 전까지 발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발언시간은 20분”을 “발언시간은 30분”으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중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을 허가 할 수 있다”를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제3항중 “없다”를 “없으며”로 “다만, 보충질문”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 할 수 있고”로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연장할 수 있다.

동조제4항“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충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신설〉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3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 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분 이내의 발언(이하“3분 자유발언”이라 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②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3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31조의2(5분자유발언) ①----- ----- ----- ----- ----- 5분 ----- (“5분 -----)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의원은 5분 자유발언 48시간 전까지 발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5분 ----- ----- ----- ③5분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 시간은 <u>20분</u>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 <u>30분</u>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생략) ②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제66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①(현행과 같음) ②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할 수 있다.
③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u>없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u> <u>으로 실시할 수 있고</u>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u>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10분 연장할 수 있다.</u>
④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u>미리 소요</u> <u>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u> <u>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u> <u>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u> <u>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u> <u>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u> <u>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u>
(신설)	⑤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 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